

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

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4일

순 천 시 의 회 의 장 

1. 조례안 목록

-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12. 4. ~ 12. 9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이메일

1) 주 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(장천동, 순천시의회) / 우 : 57956

2) 이메일 : gowoon@korea.kr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입법예고 조례안 1부.

2. 의견제출 서식 1부. 끝.

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354호
----------	--------

- 제출자 : 순천시장
- 제출일시 : 2020. 12. 4.

1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및 2020년 주민자치 민관협의체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- 다양한 시민의 참여 보장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·비례성 및 지역의 자율적 운영 강화

2. 주요내용

- 주민자치회 분회설치 조항 규정(안 제4조)
- 주민자치회 정수 확대(안 제6조) : (현행) 20~30명 → (개정안) 20~50명
- 주민자치회의 장 연임(안 제10조) : (현행) 연임불가 → (개정안) 1회 연임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~제29조

5. 관련 부서 의견 : 해당 없음

6. 예산상황 : 비용추계서 첨부

7. 사전예고 결과 : 입법예고(2020. 11. 13. ~ 12. 3.) 결과 / 의견 제출자 없음

8. 사전협의(승인)사항
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2020. 11. 13.(여성가족과-23601호)
- 예산부서 심의필 : 2020. 11. 11.(자치혁신과-14490호)
- 규제개혁 심의필 : 해당 없음
- 법제부서 심의필 : 2020. 11. 19.(기획예산실-16228호)
- 법제부서 공고필 : 2020. 11. 12.(순천시 공고2020-2314호)

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.
1. 도서 및 벽지 지역
 2. 인구·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
 3.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

제6조 중 “30명” 을 “50명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5항 “연임할 수 없다” 를 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자치회장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선임된 주민자치회장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설치 등) ①~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설치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. 1. 도서 및 벽지 지역 2. 인구·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.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
제2조(주민자치회 정수)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<u>30명</u> 이하로 구성한다.	제2조(주민자치회 정수) ----- ----- <u>50명</u> -----.
제10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~④ (생략) ⑤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<u>연임할 수 없다.</u>	제10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, <u>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

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 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